1. 자가백신관련 고시개정(안) 검토

우리 협회에서는 자가백신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 고시내용을 변경토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농림수산부 고시 제94-53호 : 1994. 9. 22)을 개정코자 농림수산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 홍보한다.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 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 및 품목허가등지침(농림수산부 고시 제1994-53호, '94.9.22)중 다음과 같이 재정 고시합니다.

1996. 3.

농 림 수 산 부 장 관

동물용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등지침중 개정(안)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가 농장용 생물학적제제)① 자가 농장용 생물학적제제라 함은 축산업자가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자기 농장에서 분리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소(이하 "제조업소"라 한다)에 주문생산한 생물학적제제(이하 "자가백신"이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가백신 제조용 미생물은 특정 농장에서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병원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당해 농장의 가축중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으로 죽은 가축등에서 분리된 병원체일 것.
2. 자가백신에 사용되는 병원체는 불활화하여 독성이 없어야 하고, 생산된 자가백신은 해당 병원체를 분리한 농장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자가백신은 제조업소에서 제조번호를 부여할 수 없거나 국가검정이 곤란한 제품일 것.

② 자가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대상질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장균증, 2. 돼지흉막폐염, 3. 파스튜렐라증
4. 기타 수의과학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질병

③ 자가백신을 생산하는 제조업소는 자가백신 제조용 분리미생물을 동정함에 있어 해당 미생물이 세균, 곰팡이 또는 마이코플라즈마일 경우에는 종명까지,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과명까지 각각 동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미생물에 대한 균독주명과 혈정형의 분리 동정은 해당 미생물을 분리한 날로부터 15월까지, 최초 자가백신을 생산할 날로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소가 자가백신을 제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시험과 불활화확인시험등(이하 "자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자가시험이 완료된 날로부터 4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가백신제조신고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는 자가백신제조신고서 사본과 자가백신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시험은 해당질병에 대한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시험 항목과 불활화확인시험 항목에 따라 각각 실시한다.
2. 자가시험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까지 관찰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자가 백신을 자가백신제조 요정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자가시험은 검정기준에 따라 계속 실시 한다.
3. 제2호의 자가백신이 안전시험을 실시하는 기간동안 실험동물이 질병에 걸린 증상을 보이거나 폐사할 경우 또는 불활화 확인시험과정에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가백신을 회수하여 폐각한다.

⑥ 자가백신제품의 표시 내용에는 품명, 제조신고일자, 제조년월일, 제조업소명, 저장방법, 유효기간, 사용농장 명칭과 소재지, 용법 및 용량, 효능 및 효과, 주의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⑦ 자가백신제조용 미생물을 분리한 농장과 인접한 농장의 경우 당해 농장소속 수의사의 병성감정결과에 따라 당초 미생물을 분리한 농장에서 발생한 질병과 유사하거나 같은 질병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가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⑧ 자가백신에 대하여는 국가검정동물의약품검정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검정을 면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자가 생물학적제제)규정은 '1996. 7. 1부터 적용한다.

2.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농촌진흥청은 3월 14일부로 돼지전염성위장염 발생경보와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돼지전염성위장염(TGE)은 1995년 11월 22일에 1차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바 있으나 96년 2월-3월 7일사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13,000여두가 폐사하는 등의 큰 피해를 내고 있다.

돼지 콜레라는 최근 경북지역에서 1,800여두가 발병하는등 환절기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양축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있는 질병이다.

두질병 공히 철저하고 정확하게 사양관리 체계에 따라 자돈때부터 예방접종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 양축농가에서의 철저한 질병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3.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을 돕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업인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무료 민·형사소송대행, 현지 이동법률상담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공익예금(농협 : 농민사랑통장, 수협 : 어민사랑통장) 및 제휴카드(농협 : 농어민법률구조카드)를 개발 시행하고 있어 소개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가. 설립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7. 9. 1설립된 법무부 산하단체
 나. 사업내용
  -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면접·전화·서신에 의한 법률상담
  -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행
  -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이동법률상담등 계몽사업

2.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
 가. 필요성
  - 현대복지국가는 의료보험 등의 물질적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법률복지제도인 법률구조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대다수 선진국가에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무료법률구조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 소송대행, 무료법률상담, 현지 이동법률상담 등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농어민들이 WTO체제출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볼때 그 실시가 시급하다 할것임.
  ※ 95년도 예산지원 현황 - 미국 : 5천억원, 영국 : 1조 9천억원, 우리나라 : 58억
 나. 공익예금 개발
  - 농어민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농협과 "공익예금(농민사랑통장)"을 개발하여 가입예금 이자의 2%(별단예금인 경우 50%) 해당액을 농협에서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 기금으로 출연함 [예금가입자는 부담없음]
  - 또한 신용카드중 농협을 통한 제휴카드(농어민 법률구조카드)를 개발하여 사용액의 0.1%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4.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첨가사용기준 개정 내용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1996-22호(96. 4. 6)되어 소개한다.

A. 주요 개정 내용
 가. 총 칙
  - 동일 배합사료내 2종 이상의 동물약품 첨가금지 조항 폐지「별표2」
  - 착유우, 유산양용 배합사료에 항생물질 첨가 금지조항 삭제
  - 도살전 7일간의 일괄 휴약기간을 폐기하고, 제조 품목허가사항 및 안전 사용기준의 규정에 의한 휴약기간를 준수토록 함
 나. 별 표
  - 대상 배합사료의 범위를 세분화 함
  - 소용 15개 품목, 돼지용 38개 품목, 닭 45개 품목
  - 발암성 물질로 사용 제한이 권고되고 있는 후라졸리돈 삭제
  - 배합금기 약품을 규정한 「별표2」 삭제

※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 상세내역은 별지소개

5. 동물약사 통계소책자 발간

협회에서는 1995년 통계소책자를 발간하여 무료배부후 잔량을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다.
구입방법은 협회 기획조사부에 직접 방문구매 하거나, 온라인으로 통장(중소기업은행 221-001596-01-015 : 이 오 직)에 해당책자 가격과 발송료 포함가격을 입금하고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구 분	발간부수	무료배부	판매부수	판매가격	비 고
1995 동물용의약품등 분류집	150	100	50	25,000	선착순판매
1995 동물용의약품등 생산·판매실적	150	100	50	20,000	
1995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입실적	150	100	50	25,000	
계	450	300	150	70,000	

6.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중 「별표1」

□ 돼지

품 목	어린돼지용			비육돈용			번식돈용				비 고
	갓난 돼지	젖먹이 돼지	젖뗀 돼지	육성돈	비육돈 전기	비육돈 후기	번식용 수돼지	번식용 암돼지	임신 돼지	포유 돼지	
노시헵타이드	2.5-20	2.5-20	2.5-20	2.5-20	2.5-20	-	-	-	-	-	
니트로빈	10-25	10-25	10-25	5-15	5-15	-	-	-	-	-	첨가량은 배합사료 1M/T당 첨가하는 g을 말함.
데스토마이신A	5-10	5-10	5-10	5-10	-	-	-	-	-	-	
로니다졸	60	60	60	60	-	-	-	-	-	-	
염산린코마이신	44	44	44	44	44	-	-	-	-	-	"-"은 첨가하지않는 것을 뜻함
오란델시트레이트	30	30	30	30	-	-	-	-	-	-	
바시트라신아연	10-100	10-100	10-100	4-40	4-40	-	-	-	-	-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11-33	11-33	11-33	11-33	11-33	-	-	-	-	-	
밤버마이신	5-20	5-20	5-20	1-10	1-10	-	-	-	-	-	
버지니아마이신	20-40	20-40	5-25	10-20	10-20	-	20-40	20-40	-	20-40	
비코자마이신	5-20	5-20	5-20	5-20	-	-	-	-	-	-	
살리노마이신	-	-	30-60	15-30	15-30	-	-	-	-	-	· 티아무린과 혼합 금지
셈두라마이신	25	25	25	-	-	-	-	-	25	25	
설파메타진	100	100	100	-	-	-	-	-	-	-	
설파치아졸	100	100	100	-	-	-	-	-	-	-	
세데카마이신	5-20	5-20	5-20	5-20	5-20	-	-	-	-	-	
스펙티노마이신	5.5-22	5.5-22	5.5-22	5.5-22	5.5-22	-	-	-	-	-	
스피라마이신	5-100	5-100	5-100	5-50	5-20	-	-	-	-	-	
아보파신	10-40	10-40	10-40	5-20	5-20	-	-	-	-	-	
아빌라마이신	20-40	20-40	20-40	10-20	10-20	-	-	-	-	-	
아프라마이신	150	150	150	150	150	-	-	-	-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황산네오마이신	55 + 38-154	55 + 38-154	55-110 + 55-220	55-110 + 55-220	-	-	-	-	55-110 + 55-220	-	
에리스로마이신	10-70	10-70	10-70	10	10	-	-	-	-	-	
엔라마이신	2.5-20	2.5-20	2.5-20	2.5-20	2.5-20	-	-	-	-	-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4급 암모늄염	27-55	27-55	55-110	55-165	55-165	-	-	-	-	-	
오라퀸독스	15-50	15-50	15-50	15-50	-	-	-	-	-	-	
이버멕틴	-	-	2	2	-	-	-	-	-	-	· 급여기간은 7일간으로 제한
치오펩틴	2-10	2-10	2-10	2-10	-	-	-	-	-	-	
카바독스	20-50	20-50	20-50	20-50	-	-	-	-	-	-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염산염 또는 칼슘	55-110	55-110	11-110	11-110	11-110	-	55-110	55-110	-	55-110	
키타사마이신	5.6-100	5.6-100	5.6-100	-	-	-	-	-	-	-	
타이로신인산염	22-110	22-110	22-110	22-44	22-44	-	-	-	-	-	
티아무린	10-40	10-40	10-40	10-40	10-40	-	-	-	-	-	
페니실린	10-50	10-50	10-50	10-50	-	-	-	-	-	-	· 살리노마이신과 혼합금지
펜벤디졸	4	4	4	4	-	-	-	-	-	-	
하이그로마이신B	6-12	6-12	6-12	6-12	6-12	-	-	-	-	-	
황산네오마이신	10-100	10-100	10-100	-	-	-	-	-	-	-	
황산콜리스틴	2-40	2-40	2-40	2-40	-	-	-	-	-	-	

□ 소

품 목	고기소 번식용						고기소 비육용					젖소(번식용)					비 고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 송아지	종모우	임신우	포유우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소 비육전기	큰소 비육중기	큰소 비육후기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 송아지	임신우	종모우	
라사로시드나트륨	-	-	11-33	-	-	-		-	11-33	11-33	-	-	-	11-33	-	-	첨가량은 배합사료 1M/T당 첨가하는 g을 말함. "-"은 첨가하지 않는 것을 뜻함
모넨신나트륨	-	-	5.5-33	-	-	-	-	-	5.5-33	5.5-33	-	-	-	5.5-33	-	-	
바시트라신아연	10-100	4-40	-	-	-	-	10-100	4-40	-	-	-	10-100	4-40	-	-	-	
밤버마이신	5-15	2-10	2-10	-	-	-	5-15	2-10	2-10	2-10	-	5-15	2-10	2-10	-	-	
버지니아마이신	5-80	5-20	5-20	-	-	-	5-80	5-20	5-20	5-20	-	5-80	5-20	5-20	-	-	
살리노마이신	-	-	20	-	-	-	-	-	20	20	-	-	-	20	-	-	
스파라마이신	5-80	5-20	-	-	-	-	5-80	5-20	-	-	-	5-80	5-20	-	-	-	
아보파신	15-40	15-40	15-40	-	-	-	15-40	15-40	15-40	15-30	-	15-40	15-40	15-40	-	-	
염산옥시테트라싸이클린 + 황산네오마이신	55-110 55-220	55-110 55-220	-	-	-	-	55-110 55-220	55-110 55-220	-	-	-	55-110 55-220	55-110 55-220	-	-	-	
에리스로마이신	13.2-24.7	13.2-24.7	13.2-24.7	-	-	-	13.2-24.7	13.2-24.7	13.2-24.7	-	-	13.2-24.7	13.2-24.7	13.2-24.7	-	-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4급 암모늄염	55-110	55-110	55-82	-	-	-	55-110	55-110	55-82	55-82	-	55-110	55-110	55-82	-	-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칼슘	11-55	11-55	5.5-22	-	-	-	11-55	11-55	5.5-22	-	-	11-55	11-55	5.5-22	-	-	
타이로신인산염	-	-	-	-	-	-	-	-	-	8.8-11	-	-	-	-			
황산네오마이신	10-100	10-70	-	-	-	-	10-100	10-70	-	-	-	10-100	10-70	-	-	-	
황산콜리스틴	5-40	-	-	-	-	-	5-40	-	-	-	-	5-40					

□ 닭

품 목	산란계용							종계용	육계용			비 고
	어린 병아리	중 병아리	큰 병아리	산란전	산란초	산란 중기	산란 말기		전기	후기	출하	
나라신	60-80	60-80	60-80	-	-	-	-	-	60-80	60-80	-	첨가량은 배합사료 1M/T당첨가하는 g을 말함. "-"은 첨가하지않는 것을 뜻함
나이스타틴	55	55	55	-	-	-	-	-	55	55	-	
나이카바진	100-125	100-125	100-125	-	-	-	-	-	100-125	100-125	-	
노시헵타이드	1.25-10	1.25-10	1.25-10	-	-	-	-	-	1.25-10	1.25-10	-	
니트로빈	10-15	10-15	10-15	-	-	-	-	-	10-15	-	-	
나라신 + 나이카바진	-	-	-	-	-	-	-	-	30-50 30-50	30-50 30-50	-	
데스토마이신A	5-10	5-10	5-10	-	-	-	-	5-10	5-10	5-10	-	
데콕퀴네이트	20-40	20-40	20-40	-	-	-	-	-	20-40	20-40	-	
디클리주릴	1	1	1	-	-	-	-	-	1	1	-	
라바덱스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	
라사로시드나트륨	75-125	75-125	75-125	-	-	-	-	-	75-125	75-125	-	
록사손	25-50	25-50	25-50	-	-	-	-	-	25-50	25-50	-	
염산린코마이신	-	-	-	-	-	-	-	-	2.2-4.4	2.2-4.4	-	
아두라마이신암모늄	5	5	5	-	-	-	-	-	5	5	-	
모넨신나트륨	100-121	100-121	100-121	-	-	-	-	-	100-121	100-121	-	
바시트라신아연	4-50	4-50	4-50	10-50	10-50	10-50	10-50	4-50	4-50	4-50	-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4.4-5.5	4.4-5.5	4.4-5.5	11-27.5	11-27.5	11-27.5	11-27.5	11-27.5	4.4-55	4.4-55	-	
밤버마이신	0.5-5	0.5-5	0.5-5	2-5	2-5	2-5	2-5	2-5	0.5-5	0.5-5	-	

품 목	산란계용							종계용	육계용			비 고
	어린 병아리	중 병아리	큰 병아리	산란전	산란초	산란 중기	산란 말기		전기	후기	출하	
버지니아마이신	5-15	5-15	5-15	10-20	10-20	10-20	10-20	10-20	5-15	5-15	-	
비코자마이신	5-20	5-20	5-20	-	-	-	-	-	5-20	5-20	-	
실리노마이신	44-66	44-66	44-66	-	-	-	-	-	44-66	44-66	-	
셈두리마이신	25	25	25	-	-	-	-	-	25	25	-	
스피리마이신	5-20	5-20	5-20	-	-	-	-	-	5-20	5-20	-	
설파디메톡신 + 오르메토프림	125 75	125 75	125 75	-	-	-	-	-	125 75	125 75	-	
아보파신	7.5-15	7.5-15	7.5-15	-	-	-	-	-	7.5-15	7.5-15	-	
이빌리마이신	2.5-10	2.5-10	2.5-10	-	-	-	-	-	2.5-10	2.5-10	-	
아프리노시드	60	60	60	-	-	-	-	-	60	60	-	
암프로리움 + 에토파베이트 + 설파퀴녹사린	100 5 60	100 5 60	100 5 60	-	-	-	-	-	100 5 60	100 5 60	-	
염산옥시테트라싸이클린 + 황산네오마이신	55-110 55-220	55-110 55-220	55-110 55-220	-	-	-	-	55-110 55-220	55-110 55-220	55-110 55-220	-	
에리스로마이신	5-20	5-20	5-20	-	-	-	-	20	5-20	5-20	-	
엔라마이신	1-10	1-10	1-10	-	-	-	-	1-10	1-10	1-10	-	
염산로베니딘	33	33	33	-	-	-	-	-	33	33	-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4급 암모늄염	55-110	55-110	55-110	-	-	-	-	55-110	55-110	55-110	-	
죠렌	40-125	40-125	40-125	-	-	-	-	-	40-125	40-125	-	
치오펩틴	2-10	2-10	2-10	-	-	-	-	2-10	2-10	2-10	-	
크로피돌	125-250	125-250	125-250	-	-	-	-	-	125-250	125-250	-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칼슘	11-110	11-110	11-110	-	-	-	-	11-110	11-110	11-110	-	
키타사마이신	5.6-11	5.6-11	5.6-11	-	-	-	-	-	5.6-11	-	-	
크로피돌 + 메칠벤조퀘이트	100 10	100 10	100 10	-	-	-	-	-	100 10	100 10	-	
인산탄이로신	4.4-55	4.4-55	4.4-55	22-55	-	-	-	22-55	4.4-55	4.4-55	-	
페니실린	2.6-55	2.6-55	2.6-55	-	-	-	-	-	2.6-55	2.6-55	-	
하이그로마이신B	6-12	6-12	6-12	-	-	-	-	-	6-12	6-12	-	
할로푸지논	3	3	3	-	-	-	-	-	3	3	-	
황산네오마이신	10-35	10-35	10-35	-	-	-	-	-	10-35	-	-	
황산콜리스틴	2-20	2-20	2-20	-	-	-	-	2-20	2-20	2-20	-	

1996년 7월 부터는 세관관련 업무도 국내최초 요건확인 프로그램인

EDI KAHPA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DI 개통을 축하합니다 !!

(주)한 동, 바이엘코리아(주), (주)고려케미칼, (주)태 경, 녹십자수의약품(주), (주)우성양행, (주)중앙케미칼

동우컴퓨터

7. 배합사료첨가사용 기준중 [별표 2 (대상 배합사료)]

축 종	용 도	명 칭	사 용 범 위
고 기 소	번 식 용	어린송아지사료	생후 3개월 이내
		중송아지사료	4-6개월
		큰송아지사료	7-12개월
		종모우사료	13개월 이후 수소
		임신우사료	13개월 - 분만전
		포유우사료	분만 - 분만후 3개월
	비 육 용	어린송아지사료	생후 3개월 미만
		중송아지사료	3월 - 250KG 미만
		큰소비육전기사료	250KG - 400KG 미만
		큰소비육중기사료	400KG - 500KG 미만
		큰소비육후기사료	500KG 이상
젖 소	번 식 용	어린송아지사료	생후 3개월 이내
		중송아지사료	4-6개월
		큰송아지사료	7개월-임신전
		임신우사료	임신-분만 2개월전
		종모우사료	11개월 이후의 종모우
	비 유 용	비유초기젖소사료	분만후 - 비유 3개월 미만(산유량 31-40KG)
		비유중기젖소사료	비유 3개월 - 비유 6개월 미만(산유량 21-30KG)
		비유말기젖소사료	비유 6개월 - 건유기 이전(산유량 11-20KG)
		건유기젖소사료	건유기(산유량 10KG 이하)
		고능력젖소사료	산유량 40KG 이상
돼 지	공 통	갓난돼지사료	체중 5KG 미만
		젖먹이돼지사료	5 - 10KG 미만
		젖뗀돼지사료	10 - 20KG 미만
	번 식 용	번식용숫돼지사료	체중 25KG 이상 수퇘지
		번식용암돼지사료	25KG - 임신전
		임신돼지사료	임신중
		포유돼지사료	포유중
	비 육 용	육성돈사료	체중 25KG - 60KG 미만
		비육돈전기사료	60KG 이상
		비육돈후기사료	출하 15일전 - 출하시
닭	산 란 용	어린병아리사료	0주 - 6주
		중병아리사료	7 - 12주
		큰병아리사료	13주 - 산란개시 2주전
		산란전사료	산란 개시 2주전 - 산란 개시
		산란초기사료	산란 개시 - 40주
		산란중기사료	41주 - 60주
		산란말기사료	61주
	종 계 용	종계사료	산란계 또는 육용계 종란 생산
	육 계 용	육계전기사료	0주 - 3주령
		육계후기사료	4주 이상
		육계출하사료	출하 7-10일전 출하시